

인천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698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6986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2475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21. 7. 16.

판결선고 2021. 10. 1.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24755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8. 8.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8. 8. 16. 접수 제293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이대로, 판사 이혜선

별지